

#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현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9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년 6월 5일

대표발의자: 심현정 의원

발 의 자: 김성기, 이은미, 이창열,  
김광성, 남진삼, 박춘희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지방의회 의원이 갑질, 성 비위,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 위반 등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를 받더라도 재직 중에는 의정비를 지급받고 있어, 제재 기준 강화와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제한 규정 구체화(안 제3조의 2 [별표 3])

※ 기존 제2조의2를 제3조의2로 하고, 별표 3을 신설

나. 띄어쓰기 수정(안 제3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불입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입법예고: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평창군 회의 규칙」 제22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 제외

「붙임 1」 조례안

평창군 조례 제 호

##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제3조의2로 하고, 같은 조(종전의 제2조의2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의2(지급제한) 의원이 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

해당하는 징계를 받거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인 경우,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별표 3에 따라 제한하여 지급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의정활동비 :”를 “의정활동비: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월정수당 :”을 “월정수당: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”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(제3조의2 관련)

종류	제한 사항	
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	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2분의 1 감액 지급	
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	출석정지 기간에 한하여 2분의 1 감액 지급	
	다만, 출석정지 사유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.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「지방자치법」 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.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. 의원이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	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하여 3개월간 전액 지급 제한
공소제기 후 구금상태	전액 지급 제한	

비고

1.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.
2. 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관련한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거나, 공소제기 된 소송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의2(지급제한)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,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</p> <p>제3조(지급기준) 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(이하 “의정활동비 등”이라 한다)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의정활동비</u> : 별표 1</p> <p>2. <u>월정수당</u> : 별표 2</p> <p>② 여비 지급기준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 별표 6(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)에 의한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적용한다.</p>	<p>제3조의2(지급제한) 의원이 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거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인 경우,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별표 3에 따라 제한하여 지급한다.</p> <p>제3조(지급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의정활동비</u>: -----</p> <p>2. <u>월정수당</u>: -----</p> <p>② ----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「붙임 2」 관련 법령

**<지 방 자 치 법>**

제100조(징계의 종류와 의결)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공개회의에서의 경고
2. 공개회의에서의 사과
3. 30일 이내의 출석정지
4. 제명

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의 경우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심현정 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1